

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9호서식]

신 원 보 증 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피보증 외국인	성	명	漢字
	생년월일		성별 []남 []여
	국적		여권번호
	대한민국 주소		전화번호
	체류목적		

신원보증인	가. 인적사항		
	성명		漢字
	국적		성별 []남 []여
	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		전화번호
	주소		
	피보증인과의 관계		
	근무처		직위
	근무처 주소		비고
	나. 보증기간(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) <u>작성예시) 23.00.00.(신청일기준) ~ 27.00.00.(최장 4년까지 가능)</u>		
	다. 보증내용 (1)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. (2)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. (3)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.		

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.

년 월 일

신원보증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